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 6. 11. 제 천 시 장
- 회 부 일 : 2007. 6. 11.
- 상 정 일 : 2007. 6. 18.(제136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산림관리팀 윤기선)

### 가. 제안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문을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 임.

### 나. 주요내용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산림법」 제32조 내지 제33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는등 현행 조례의 관련법 인용 조문의 명칭을 변경 정비하는 것 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근하)

### 【 法的檢討 】

-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6호로 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휴양림의 조성과 휴양림의 위탁관리,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문을 변경 정비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42조 등에 의거 2007년 5월 16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 【 行政的檢討 】

-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행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문을 변경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으나, 현행 조례 제1조(목적)에서 인용한 산림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내용은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 위탁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인용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내용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에 대한 것만 명시하고 있어,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의 근거 법령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즉 근거법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2조”로 한다로 함이 바람직 함.
- 상위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단순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상위법의 인용이 현행 조례의 형식과 의미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세심히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4. 질의 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조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산림법 제32조 내지 제33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만 규정한 사유는?(김명섭 의원)

### 나. 답변요지 <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

-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22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법률로 17조 내지 22조로 인용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함.

## 5. 소수의견

“ 없 음 ”

## 6. 토 론 요 지

- 특별한 신조문이나 폐지 조문이 없이 기존 산림법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문제로 조문인용 누락부분의 수정이 필요 함.  
(김명섭 의원)

## 7. 심 사 내 용

- 김명섭위원외 3인 수정안 발의(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수정안 표결결과
  - 출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수정안 가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1.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조문대비표 1부. 끝.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155
------	------

제안연월일 : 2007. 6. 18.

제안자 : 김명섭 위원외 3인

### 1. 수정이유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과 관련이 있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관리 운영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 수정주요골자

- 안 제1조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7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2조”로 한다.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7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2조”로 한다.

#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p> <p>..... 제17조 내지 제22조 ..</p> <p>.....</p> <p>.....</p> <p>.....</p> <p>.....</p> <p>.....</p>